



會訓
• • •
創奉誠
意仕實

漁港消息

발행인 孫井植 特殊法人 韓國漁港協會
편집인 金在克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5-9
인쇄인 568-6651~2
ISSN 1227-7053 568-5595~6
등록일: 1988년 2월 19일 FAX. 568-6653

[月刊] 第119號

THE FISHING PORT NEWS

1997年 11月 25日(火曜日) (1)

관광 휴식 등 기능시설 범위 확대 일반인도 시설물 사용 수익 가능

개정 어항법, 어업인 소득증대 민자유치 촉진 도모

지난 11월 18일 제185회 정기국회에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어촌의 생활환경 개선 및 민자유치를 촉진하고 어항의 활성화 도모를 주요 과제로 하는 어항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 어항법 신구 주요 조문 대비표 2면에 상보)

해양수산부는 어항을 어촌 지역 사회 발전의 중심 핵심으로 할 수 있도록 어항 기능에 수산물 유통 시설을 추가하고 어촌 환경의 개선과 어촌의 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 복지 시설 및 관광 휴식 시설의 범위를 확대했다.

어항 시설 사업을 비관리 청이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 경우 종전에는 그가 투자한 총 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어항 시설 용지 를 제외한 잔여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

취득이 가능, 민자유치의 범위가 제한됐던 점을 감안해 일부는 일부 기능 시설, 문화 복지 시설, 관광 휴식 시설 용지로 확대하는 한편, 비관리 청이 어항 시설 사업을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 귀속된 기본 시설과 기능 시설은 수산업 협동 조합·어촌 계단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일반인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자유치의 범위를 확대하는 어항 시설 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관리 청이 기본 시설 구역, 기능 시설 구역 및 복지 시설 구역으로 3분하여 어항 시설 계획을 수립하던 것을 앞으로는 어항 시설 구역의 구분 없이 어항 시설 계획을 수립하도록 어항을 위임·위탁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 어항법에서는 한국어 항협회가 어항에 의한 사무의 권한 일부를 위임·위탁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어항 건설 예산 1,639억 원, 금년비 5.2% 증가

1·3종 32개 항에 집중 투자

내년도 어항 건설 사업비가 1천 6백 39억 원, 1천 6백 만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올해보다 80억 원(5.2%)이 늘어난 수준이다.

항종별로 보면 해양수산부 관리 청인 제 1·3종 어항 건설 비는 1천 4백 46억 원, 1천 9백 만원으로 올해보다 80억 원(5.9%) 증가되었고, 시·도지사 관리 청인 제 2종 어항은 3백 85억 원(지방비 50% 포함)으로 올해 예산과 동일한 수준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내년도 1·3종 어항 건설 사업비 가운데 일반 회계 6백 24억 원, 5백 만원은 '93년 이후에 착공하여 계속 투자 중에 있는 13개 항에 집중 투자 할 예정이고, 농특회계 8백 21억 원, 8천 4백 만원은 '92년 이전에 착공하여 계속 투자 중에 있는 19개

항에 집중 투자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3종 어항의 견실 시공을 위하여 시공 항에 대한 시공 평가 및 견실 시공 대책을 수립, 추진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또 제 2종 어항 개발 사업비 3백 85억 원, 중국비 지원 1백 92억 원, 5천 만원은 각 시·도 간의 균형 개발과 안정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각 시·도에서 제 2종 어항을 견실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시공 기술 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 기술자를 투입, 시공 현장에 대한 공정, 품질, 인력 관리 실태를 평가하는 한편 부실한 점은 시정토록 하며, 시·도 및 시·군 어항 공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공 기술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이들 신규 공사 중 울산 신항만 방파제와 부산 신항 호안, 목포 신항 인벽 축조 등 4건에는 1천 억 원에서 많게는 7천 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될 예정이어서 건설 업체들의 수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항별 주요 신규 사업을 보면 울산 신항의 경우 방파제 공사의 설계 작업이 연말쯤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부터 오는 2006년까지 총 7천 70억 원을 들여 1단계(2.45km) 공사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1998년도 어항 건설 예산

(단위: 백만 원)

항 종	재 원	'98 예산(A)	'97 예산(B)	증감(A-B, %)
계		163,916	155,838	8,078(5.2%)
제 1·3종 어항	일반 회계	144,639	136,558	8,081(5.9%)
	농특회계	62,455	54,374	8,081(14.9%)
제 2종 어항	농특회계	82,184	82,184	-
	일반 회계	19,250	19,250	-
경상 경비		19,250	19,250	-
		27	30	△3(10%)

어항협회 원남동 시대 개막

전 수검 청사를 협회 독립 청사로

용 수의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협회는 전 국립 수산물 검사소의 토지 9백 67m², 건물 5동, 8백 20.7m², 공작물 11식 등 청사 일체를 협회 독립 청사로 사용하게 됐다.
협회는 오는 12월 22일 원남동 청사에 입주할 예정이다.

제 185회 정기 국회에서 어항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 주요 내용은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의 생활 환경 개선, 그리고 민자 유치 촉진을 통한 어항 개발의 활성화로 요약할 수 있다.

잘 알고 있다시피 제 24년 만인 지난 93년 처음으로 개정된 어항법은 여러 가지로 어항 개발을 위한 갖가지 내용을 포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여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어항이 어촌 지역 사회 발전의 중심 핵심이 될 수 있게끔 실제적인 투자가 이루어 지도록 하는 유인책의 미흡이 가장 큰 사유 가운데 하나가 될 것 같다.

실례로 어항 개발에 민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길을 터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쪽엔 발목을 잡는 제한 규정이 엄존함으로써 선뜻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게 현실이었다.

이번에 개정된 어항법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은 앞으로 실제적인 어항 개발과 발전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방파제, 물양장 등 어항 기본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에 대해 민간 투자의 문호를 활짝 개방함으로써 어업인 소득 증대와 어항 개발의 이중 효과를 거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를 좀 더 풀이하면 어항을 어촌 지역 사회 발전의 중심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어항의 기능을 관광, 교통, 유통 등으로 다양화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와 어촌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방파제, 물양장 등의 기본 시설을 제외한 일부 기능 기설, 문화 복지 시설, 관광 휴식 용지에 대해서도 일반인의 소유권 취득을 가능케 해줌으로써 어항 시설 사업에 대한 민자 유치를 촉진하고 어항 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어촌의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 복지 시설 및 관광 휴식 시설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는 선진 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서 우리나라로 장래의 어항 어촌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다른 산업에 비해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아온 수산업이 지난 수십 년간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 흐자 노릇을 해오다 금년부터 결국 적자로 돌아서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었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경쟁력이 힘에 부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긴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어항 개발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흔히 관광 산업을 굽뚝 없는 산업이라 일컫고 있다. 특별한 밀천 안들이고서도 높은 외화 가득 둘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바다가 최고의 관광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추세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많다. 바로 그런 천혜의 조건을 우리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해 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협회가 기회 있을 때마다 외쳐온 선진 어항 어촌 건설의 방향 즉 어항을 해양 관광, 휴식 공간 및 만남·교류의 장으로 만들어 어촌 소득을 증대시키고 아울러 활력 있고 쾌적한 어항 어촌으로 만들어 나가는 주장을 이러한 내용에서 비롯된 것임은 물론이다.

다행히 이번 어항법 개정을 통해 그간 투자의욕은 있어도 이를 가로막는 몇 가지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나라 어항 개발을 위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우리 속담이 있다. 문전 옥답이 아무리 광활하게 펼쳐져 있으면 무엇 하랴.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내버려 두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을.

이런 관점에서 이번 어항법 개정은 앞으로 우리나라 어항 개발에 또 다른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고 있다.

다만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이므로 정부가 어떻게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지역 수산인들이 스스로 앞장서 어항 개발을 위한 모색을 해보는 진일보한 의식도 함께 가져야 할 때임을 첨언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개정 어항법

개정어항법 신·구 주요조문 대비표

現 行	改 正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중략) 3. “漁港施設”이라 함은 漁港區域안에 있는 다음의 施設을 말한다.	第2條(定義) ----- 3. ----- 漁港區域안에 있는 다음各目的 施設과 漁港區域밖에 있는 다음各目的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
나. 機能施設 (1)·(2) (생략) (3) 漁船修理場·漁具乾燥場·漁具製作場 등 漁船·漁具保全施設 (4) (생략) (5) 活魚一時保管簡易施設 (6) 荷役機械, 製水·冷凍·冷藏施設, 加工工場·販賣場·野積場 등 水產物處理加工施設 (7) (생략) (8) 管理·觀測施設, 管理船의 保管 및 接岸施設, 機材倉庫 등 漁港管理施設 (9) (생략) 다. 福祉施設 (1) 診療施設·宿泊施設·沐浴施設·休憩施設 등 漁民厚生施設 (2) 낚시터·遊漁船·모터보트 등의 收容을 위한 레저用 基盤施設 (3) (생략) 〈新設〉	나. 機能施設 (1)·(2) (現行과 같음) (3) 漁船建造·修理場, 漁具乾燥場, 漁具製作·修理場, 野積場, 機材倉庫 등 漁船·漁具保全施設 (4) (現行과 같음) (5) 水產物市場·水產物委販場·水產物直賣場·水產物集荷場·活魚一時保管施設 등 水產物流通·販賣施設 (6) 荷役機械, 製水·冷凍·冷藏施設, 水產物加工工場 등 水產物處理·加工施設 (7) (現行과 같음) (8) 漁港管理施設·海洋觀測施設·船舶出入港申告機關 등 海洋水產關聯 公共施設 (9) (現行과 같음) 다. 文化·福祉施設 (1) 診療施設·福祉會館·體育施設 등 福祉施設 (2) 展示館·圖書館·學習館·公演場 등 文化施設 (3) (現行과 같음) 라. 觀光·休憩施設 (1) 遊覽船·낚시漁船·모터보트·요트·원드서핑등의 收容을 위한 레저用 基盤施設, 地域特產品販賣場, 生선회집 등 觀光施設 (2) 宿泊施設·沐浴施設·娛樂施設 등 休憩施設 第12條(事業施行者) ①(생략) ②----- -----, 漁港施設의 補修·補強工事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工事を 施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管理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漁港施設事業을 施行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計劃을 수립하여 管理廳과 協議하여야 한다. ④·⑥(現行 第3項 내지 第5項과 같음) ⑦管理廳은 第2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施行의 許可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1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團體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許可할 수 있다. 第15條(事業代行) ①非管理廳은 漁港施設事業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을 他人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非管理廳은 管理廳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新設〉 ②第13條의 規定은 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許可”는 “승인”으로 본다. (중략) 第25條(漁港施設의 귀속등) ①非管理廳이 施行한 漁港施設事業으로 인하여造成 또는 設置된 土地 및 施設은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條件에 따라 建工과 동시에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귀속된다. 다만, 第12條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漁港施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非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漁港施設事業을 他人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管理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防波堤·物揚場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管理廳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第13條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승인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25條(漁港施設의 귀속등) ①非管理廳(第12條第2項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漁港施設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施行한 漁港施設事業으로造成 또는 設置된 土地 및 施設은 第1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條件에 따라 建工과 동시에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귀속된다. 다만, 第12條第4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漁港施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土地에 대하여 그가 投資한 總事業費의 범위안에서 所有權을 취득할 수 있다. 1. 第2條第3號나目的 規定에 의한 機能施設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用 地 2. 第2條第3號다목 (1) 및 (2)의 規定에 의한 文化·福祉施設用 地 3. 第2條第3號라목의 規定에 의한 觀光·休憩施設用 地(레저用 基盤施設用地를 제외한다) 4. 第2條第3號바목의 規定에 의한 地의 土地 ③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귀속된 土地로서 第2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上에 대하여는 國有財產法 第33條 및 地方財政法 第83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非管理廳에게 우선적으로 賣却할 수 있다. ④----- 그用途 또는 目的에 障碍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總事業費 중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非管理廳이 취득하는 土地의 價額을 뱐 금액의 범위안에 대해 非管理廳에게 無償으로 사용·收益하게 할 수 있다. 다만, 水產業協同組合(中央會을 포함한다) 및 漁村契가 아닌 者에게는 基本施設區域과 機能施設區域를 사용·收益하게 할 수 없다. ④(생략) ⑤第2項의 規定에 의한 總事業費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非管理廳이 취득하는 殘餘土地 價額의 算定方法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⑦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에 귀속된 土地 및 施設을 無償으로 사용·收益하는 非管理廳은 國有財產法 第24條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管理廳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그 일부를 第3者에게 사용·收益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용·收益期間은 담해 土地 또는 施設의 無償使用·收益期間을 초과할 수 없다. ⑧非管理廳은 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 또는 施設의 일부를 第3者에게 사용·收益하게 한 경우에는 海洋水產部令 또는 市·道의 條例로 정하는 바에 따라 管理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第25條의 2(漁港施設의 賣却·讓與) ①管理廳은 國有財產法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管理廳이 施行한 漁港施設事業으로 造成한 土地 중 第25條第2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를 賣却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 管理廳은 國有財產法 第33條 및 地方財政法 第83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해당 土地를 第1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團體에 우선적으로 賣却할 수 있다. ③管理廳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地方財政法 第83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漁港施設을 새로운 管理廳에게 賣却할 수 있다. 1. 第1種 또는 第3種 漁港의 지점이 解除되고 당해 漁港이 第2種 漁港으로 지정된 경우 2. 第2種 漁港의 지점이 解除되고 당해 漁港이 第1種 또는 第3種 漁港으로 지정된 경우 第28條(漁港施設의 使用許可 등) ----- 市·道의 條例----- ②第1項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船舶의 경우에는 申告 없이 漁港施設을 사용 또는 占用할 수 있다. 1. 船舶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所有의 船舶 3. 海洋水產部令이 정하는 海洋水產關聯團體所有의 船舶 ③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漁港施設의 사용 또는 占用許可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益目的에 한하여 許可하여야 한다. ④管理廳이 基本施設區域과 機能施設區域의 漁港施設을 사용 또는 占用의 許可를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과 범위내에서 漁港施設을 사용 또는 占用하고자 하는 자는 管理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⑤管理廳은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사용 또는 占用의 許可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1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團體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許可할 수 있다. ⑥(現行 第3項 및 第4項과 같음) ⑦----- ----- 市·道----- 第28條의 2(漁港施設의 位置· 관리 등) ①第25條第4項 또는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漁港施設을 사용 또는 占用하는 者는 漁港施設이 袪손되지 아니하도록 位置· 관리하여야 한다. ②管理廳은 第25條第4項 또는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漁港施設을 사용 또는 占用하는 者에 대하여 漁港施設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指示를 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第30條(使用料 등의 徵收) ----- 市·道----- ②(現行과 같음) ③非管理廳은 第25條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漁港施設의 일부를 第3者에게 사용·收益하게 하는 경우에는 第3者로부터 使用料 또는 占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第30條의 2(辨償金의 徵收) ①管理廳은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漁港施設을 사용 또는 占用한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漁港施設 使用料 또는 占用料의 100分의 120에 상당하는 辨償金을 徵收할 수 있다. 다만, 第2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漁港施設을 사용 또는 占用하는 者를 제외한다. ②第30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辨償金의 徵收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31條(使用料 등의 귀속) ①漁港 및 第3種 漁港에 대한 使用料 및 占用料는 國家의 收入으로, 第2種 漁港에 대한 使用料 및 占用料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收入으로 한다. 〈新設〉 (중략) 第35條(權限의 위임·委託) ①·②(現行과 같음) ③海洋水產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海洋水產部長官의 事務는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漁港協會 또는 水產業協同組合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水產業協同組合에 委託할 수 있다. 第38條의 2(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海洋水產部長官이 第3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한 事務에 종사하는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漁港協會 또는 水產業協同組合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水產業協同組合의 任務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	--

동

정

제17회 농어촌청소년대상 시상식에 참석



조정재 해양수산부장관

▲조정재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4일 부산 가덕신항만개발 공사 기공식에 참석, 11일에는 루반더브란더 벨기에 회관 어권 지방정부 수상의 예방을 받고 한·벨기에간 해운항만분야 협력증진에 대해 협의, 17일에는 남극세종기지월동대 발대식에 참석, 18일에는 고려대 고위자연자원정책과정에서 강연을 실시, 20일에는 제17회 농어촌청소년대상 시상식에 참석, 22일에는 해양 목장화 세미나에 참석.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11월11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바다 최고경영자 조찬모임에 참석, 12일에는 주문진 소재 어항청소선 907호를 순시하고 승선원들을 격려, 이어 강릉시 연곡면 소재 국립수산 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 신축 청사 준공식에 참석, 13일에는 신한국당 대표최고위원 조청 오찬간담회에 참석, 19일에는 한국프레스센타에서 열린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주최 '97 대통령선거와 여성' 토론회에 참석, 20일에는 제17회 농어촌청소년대상 시상식에 참석, 21일에는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신한국당 합당전당대회에 참석.

▲박종식 수협중앙회장은 11월 3일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린

대한적십자 바자회 개장식에 참석, 17일에는 통영시 서호동 통영수협 신용부 및 어업인 복지회관 준공식에 참석.

▲안성봉 한국어선협회장은 11월11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바다 최고경영자 조찬모임에 참석, 12일에는 국립수산 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 신축 청사 준공식에 참석.

▲최상옥 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11월2일 경호무술 전국합기도검도대회에 참석, 4일에는 제5회 광주국악대전 전국경연대회에 참석, 5일에는 대한적십자사 광주광역시 지사 97년도 대의원총회에 참석, 10일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4H 중앙정진대회에 참석, 14일에는 제78회 전국체육대회 전남선수단해 단식에 참석, 21일에는 제7차 전남문화원 임직원연수에 참석.

▲고재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11월3일 광주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회에 참석, 10일에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행사에 참석, 15일에는 송원문예백일장 시상식을 거행.

▲조남우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11월1일 페키스탄 네팔 공사현장에 출장 8일 귀국, 13일에는 한국능률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참석, 14일에는 조선호텔에서 열린 21세기 경영인 클럽 세미나에 참석.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1월3일 한국범죄방지재단 광주 전남지부 창립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10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및 상임위원회에 참석.

▲정윤삼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1월11일 진도 공사현장을 방문.

▲장정언 정한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1월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 참석, 20일에는 제주도 범죄 예방자원봉사위원회 발족대회를 개최.

▲송재성 주식회사성호종합건설 회장은 11월10일 여수 공사현장을 방문.

인 사

▲해양수산부 인사 □이사관 승진 △중앙해난심판원 심판관 김한두 □부이사관 승진 △중앙해난심판원 수석조사관 최정섭 □서기관 승진 △국제협력관실 국제기구담당 실 정형택 △중앙해난심판원 행정실 강기순 □과장급 직 위승진 △중앙해난심판원 조



■ 한국어항협회는 11월17일 고성수협(조합장 김상태)으로부터 그 동안 고성수협관내 항포구청소 및 국토대청결운동과 관련하여 어업인 의식고취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받았다. (사진왼쪽 최일선 어항청소선 907호 선장)

사관 박영선(10월28일자) □서기관 승진 △해양정책실 연안역관리과 장병희 △어촌개발국 어촌계획과 전기정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정병표(11월1일자) △해양수산부 근무 김윤수(11월15일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홍행례(11월17일자)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감사 김상열 △기획이사 정석균 △업무이사 김재호 △위탁사업단장 금홍일(11월15일자)

정 시 이전

▲국립수산물검사소는 11월2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1동 192-7번지로 청사를 이전했다. 전화번호 : 소장실 (0344) 976-0190, 서무과 (0344) 976-1056~8, 검사과 (0344) 976-2753~5, 분석과 (0344) 976-3022~4, 전산실 (0344) 976-3708, 당직실 (0344) 976-5874.

화 족

▲주홍장씨(신라교역주식회사 상근고문)의 3녀 도희 양이 11월9일 전북 군산시 군산 결혼회관에서 회축을 밝혔다.

변 경

▲박준홍씨(해양수산부 전산통계담당관)는 최근 경기도 안산시 본오3동 우성아파트 105-107호로 자택주소를 변경했다. 전화번호 : (0345) 417-4307.

▲피경만씨는 최근 주식회사 경일기술공사(상무이사)로 근무처를 변경했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4-5 번지, 전화번호: (0343) 84-9252.

회 원 가 입

▲구본수씨(주식회사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과장)

액 비 납 부

〈대단히 감사합니다〉

■단체

▲주식회사케이에스에스엔지니어링(사장 김영수)

▲주식회사법아엔지니어링(회장 안철호)

▲주자도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박동기)

조달청 공사계약 점차 축소

요청범위 30억이상으로 상향

국가기관의 조달청 계약요청 대상공사가 현재보다 축소되는 등 조달행정규제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최근 행정쇄신위원회에 따르면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선정한 조달행정분야 개혁과제의 추진계획안에 대한 실무회의를 열고 조달분야의 행정내부규제를 이같은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행쇄위 실무회의는 현재 국가기관의 공사예정금액 20억원이상 공사는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계약의뢰도록 하고 있으나 개별공사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조달청 계약요청범위를 우선

제한적최저가 축소

내년 12월 30억으로 하향

정부는 제한적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내년초부터 30억원미만으로 축소시키로 한 당초의 방침을 바꿔 현행 대상금액 58억3천만원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수의계약대상공사의 규모가 일반공사는 1억원이하(전문공사는 5천만원이하)로, 지명경쟁대상공사 규모는 일반공사가 3억원이하(전문공사는 1억원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이와함께 계약보증금을 낙찰률에 관계없이 현금이나 보증서로 납부토록하고 현금으로 납부된 차액보증금은 50%이상 시공된 공사를 대상으로 반환금액의 1배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대체한 후 현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며 입찰참가자격요건 증명을 관련협회 단체 등에서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1월16일 정부조달업무의 효율성재고와 건설업계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2월초 공포와 동시에 시

행하기로 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현재 추정가격 58억3천만원 미만인 제한적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규모가 30억원미만으로 대폭 축소되고 3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가격과 기술능력 등을 종합심사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SOC시설 제3섹터 방식

민자유치 사업 활성화 정부는 앞으로 SOC분야의 민자유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공사, 공단 간의 협력개발방식인 제3섹터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민자사업의 재정지원을 위해 정부주식의 매각대금을 기금화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민자유치사업 현황 및 활성화방안'에서 이같은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향을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 대규모 금융조달의 어려움과 초기투자비 대비 자본 회수기간 장기화 등이 민자사업의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어항건설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주요 업종 : 상업항, 공업항 및 어항설계, 공유수면 매립설계

- ① 港灣 및 海岸
 - 商業港, 工業港 및 漁港 設計
 - 公有水面 埋立 設計
- ② 道路 및 構造
 - 高速道路, 主要 國道 設計
- ③ 上下水道
 - 管路, 工業用水路 設計
 - 下水處理場 設計
- ④ 團地 및 都市 計劃
 - 都市計劃에 의한 宅地開發 設計
 - 團地內 一般 土木 設計

- ⑤ PLANT 土木
 - 各種 PLANT 基礎 및 構造解釋
- ⑥ 鐵道
 - 國鐵 및 產業用 鐵道 設計
 - 高速電鐵 設計
- ⑦ 土質 및 基礎
 - 土質 調査 및 原位置 試驗
 - 土質 및 基礎의 諸般 成果 分析
 - 軟弱地盤 處理 設計
 - 地下 假說 構造物 設計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 앤지니어링

代表理事 金 榮 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9-58/인천 남구 주안 7동 1432-24

☎ (02)579-3790/(032)875-4660 FAX (02)579-3793





겨울철에 흔한 질병

과로 피하고 개인위생 철저히 하면 감기예방
동상은 40~42°C의 온수에 담그면 효과적

모든 사람이 겨울과 함께 연상하는 것은 추위, 눈, 외투 등이고 감기를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추위와 감기가 동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러나 감기는 여름에도 걸리니까 추위와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의학적으로 말하면 감기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되어 콧물, 코막힘, 기침, 목아픔, 때로는 열을 동반하는 질환을 감기라고 한다.

감기에 대한 예방법으로는 백신에 의한 것, 약물에 의한 것, 비타민 C를 복용하는 방법 등을 들수 있지만 백신이나 약물에 의한 예방법은 그 효과가 확실치 않고 가격이 비싸서 고령환자에게만 사용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은 감염된 환자를 멀리하는 것으로 밀폐된 다수의 군중이 모인 장소를 피하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며 과로를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다.

겨울철만 되면 동상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 동상이란 피부와 같은 신체의 연부조직이 -2°C 내지 -10°C의 찬기운에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하게 되어 산소 소비가 저하되고 세포의 대사가 정지되어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보통 귀, 코, 뺨, 손가락 발가락 등 노출부위를 침범하면 부적당한 의복, 바람습도, 혈관 질환, 운동부족 산소결핍 등이 동상에 잘 걸리게 한다.

겨울에 야외에서 일하거나 물 일을 많이 하는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잘 걸릴 수 있다.

동상의 증상은 한냉에 노출되었을 때는 아무 증상이 없으나 다시 따뜻한 곳에 들어가면 흉반, 종창발적, 소양감 등등을 나타낸다. 심한 경우에는 고사와 같이 조직 손상을 나타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조직 손상이 없는 부위에는 감각마비, 발한증대, 한냉예민증, 영양장애가 수개월 또는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 동상의 치료는 종래에는 천천히 실온에서 따뜻하게 하는 것이 정설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40~42°C의 온수에서 손톱의 색이 분홍빛을 떨 때까지 담궈두는 급속 난온 치료법이 더 효과가 좋고 치유 속도도 빠르다고 한다.

다른 병도 마찬가지지만 적절한 방한 대책을 세우고 적당한 운동을 하여 동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겨울에는 빙판이 많아 넘어지는 수가 많은데 넘어지는 사람의 대부분은 손을 짚고 엉덩방아를 짓는다. 이때 손목뼈(요골)와 척수(요추)에 골절이 빈번히 생긴다. 특히 노인의 경우 요추의 골절이 잘 올 수 있다. 손목의 경우는 골절의 문외한도 알 수 있을 만큼 눈에 띠지만 척추의 골절은 허리만 아플뿐으로 눈에 띠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겨울에 넘어져 허리가 아픈 사람은 꼭 병원에 가서 확인할 것을 권하고 있다.

펌프선의 작업능력은 대체로 토질 조건과 배송거리에 따라 표준적인 작업능력이 설정되어 있다. 이 이외에 준설의 불균형, 준설깊이 등의 현장 작업효율, 조류, 파랑조건, 장애물의 다소 등 실작업시간율을 가미한 능력 설정에 의하여 공기에 맞도록 규격을 결정한다.

펌프준설선의 능력 산정에는 대체로 다음식이 사용되고, E, n은 작업 조건에 의하여 결정되는 계수이다.

$$Q = q \times E \times n \times T$$

Q: 펌프준설선의 1일당 준설량 ($m^3/\text{일}$)

q: 펌프준설선의 1시간당 작업능력 (m^3/hr)

E: 현장작업효율

n: 실작업시간율

T: 펌프준설선의 1일당 운전시간 (hr)

② 배사관 등의 규격

해상 배사관 등의 규격은 펌프준설선의 규격에 수반하여 대체로 표 2.2.4에 보이는 조합이 사용되고 있다. 육상 배사관도 해상 배사관의 관지름과 동일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나 배사관 조달의 형편에 따라서는 관지름이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서로 다른 관지름사이에 테이프관을 삽입한다.

이 이외에 밴드관, 전환밸브, 목제페

킹, 고무페킹, 볼트, 너트 등 배관에

필수적인 부속품의 규격·수량도 동시에 결정한다.

(2) 준비공

준비공에는 기준점측량, 구역의 표시 및 사전심천측량 등이 있다.

준설공사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위험물 탐사」, 「저질조사」는 공사발주전에 발주자측에서 조사를 완료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2.2.4 펌프선·표준작업선단구성

	차량양묘선		해상관광선			교통선	
	들어올리는 능력(t)	마력 (PS)	배사관 (지름/mm)	풀로터 (지름/mm)	고무조인트 (길이/mm)	마력 (PS)	톤수 (GT)
D200	1	30	250	500	800	30	3.0
D250	1	30	300	600	900	30	3.0
E250	3	60	300	600	900	30	3.0
D420	3	60	350	700	1000	30	3.0
D600	5	90	400	900	1000	50	4.9
E750	5	90	510	1000	1200	50	4.9
D1350	10	180	560	1100	1300	50	4.9
D4000	25	420	685	1400	1500	50	4.9
D8000	45	1000	760	1500	1700	50	4.9

(주) 1. 규격표시 E는 전동선, D는 디젤선, 수치는 규격호칭마력을 표시한다.

2. 배송관, 풀로터, 고무슬리브 장치는 KS에 준한다.

3. 고무조인트 장치는 풀로터(floater) 척수+1로 한다.

기준점측량은 준설작업시에 펌프준설선의 작업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측점을 설정하는 작업이다. 통상 기준점은 시공에 적합한 지점을 육상에 설정하는데 육상만으로 불충분하면 해상에 측량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측점을 설정한다.

구역의 표시에는 작업구역과 준설구역이 있다. 일반적으로 작업구역의 표시는 부표로, 준설구역의 표시는 장대로 한다. 설치방법은 측량대에서 트랜싯(transit) 또는 6분의에 의하여 유도한다. 장대나 부표를 보면서 위치나 구역을 판단할 경우는 풍향이나 조류로 인한 이동을 고려한다.

준설토량은 준설토의 지형과 준설후의 완성된 형태를 대비하여 산출한다. 착수전의 지형은 계약시의 설계도서에 제시된 공사구역의 심천도를 이용하는 일이 많으나, 그 경우에는 착수전에 현상확인측량의 성과와 설계도서를 대조한다.

심천측량은 음향측심기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소규모인 심천측량이나 측량선의 운행이 불가능한 얕은 수역에서는 레드(lead)나 스태프(staff)가 이용된다.

본선의 위치확인이나 준설구역을 확인할 경우는 육상이나 측량대의 기준점에서 트랜싯(transit)이나 6분의를 사용하여 위치를 확인한다. 또 육상 기준점이나 측량대가 특수한 장소나 조류가 강한 곳에 있을 경우는 본선에서 6분의로 측각하고, 3간분도기를 사용하여 도면에 플롯(plot)하여 위치를 확인한다.

증명서 원본이 필요하다.

개인연금저축 가입자는 가입 금융기관이 발행한 납입증명서 원본을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내면 불입액(연 72만원 한도)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회사가 부담한 개인연금저축도 개인이 얻는 근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똑같이 공제받는다.

근로자 주식저축을 가입하면 세금에서 50만원을 깎아 준다.

근로자 주식저축을 들었으면 가입증권사로부터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연간소득의 30%까지(1천만원 한도) 저축할 수 있으며 불입액의 5%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1년안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추징 당한다.



생

활

정

복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

급여전액공제 500만원, 한도는 900만원

◆ 함께 사는 가족이라면 일단 모두 공제대상이다.

같이 사는 배우자, 혼제자매, 입양자, 자식(미혼) 등 부양자는 제한없이 모두 1백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의 경우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만 해당되며 연간소득금액이 연간 1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부모 조부모라도 호적등본 등을 내면 관례상 공제받을 수 있다.

◆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생명보험 생명공제 영수증을 꼭챙겨라. 의료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전액 공제된다. 적금성격의 저축성

보험을 제외한 보장성보험은 연간 5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된다.

◆ 병원 의료비 영수증은 인정되지만 약국 영수증은 환자이름과 발행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연간소득의 3%를 넘는 의료비는 1백만원까지 공제된다. 장애인재활이나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는 1백만원이 넘어도 추가 공제된다. 인정되는 의료비 영수증은 병원 한방 조산소 약국 영수증이다.

◆ 기부금 영수증은 많을수록 좋다. 국방현금(위문금) 수재의연금

국가-지방자치단체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된다. 또 학교 학술연구 단체 종교단체 장학단체 불우이웃돕기 등의 지정기부금은 연간 소득의 5%내에서 공제된다.

◆ 유치원이나 대학교등록금은 공제받지만 학원이나 무허가 유치원 놀이방 속셈학원 등은 공제가 없다.

대학생은 1인당 연간 2백30만 원, 유치원생은 70만원, 초·중·고교는 무제한으로 공제혜택을 받는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관인유치원의 영수증만 인정된다.

◆ 개인연금저축 공제는 납입

97년 연말정산 주요내용

공제구분	기준 및 한도	필 요 서 류
근로소득	5백만원+5백만원 초과분의 30%, 90만원한도 일용근로자는 하루 5만원	소득공제신고서
기 본	본인·배우자·부양기초 1인당 1백만원, 자녀수제한없음	주민등록등본(또는 혼적등본)
주 가	장애인·경로우대·부녀자(부녀자·세대주·맞벌이)·자녀양육비 1인당 5만원	주민등록등본·장애인증명서
공 제	소수자 독신 1백만원 21기족 50만원씩 기본에 추가 의료·고용보험 전액, 보장성은 50만원 한도	주민등록등본·장애인증명서·영수증
의료비	연금여의 3%조과분, 1백만원 한도	납입증명서·영수증
교육비	장애인·경로우대·부양기초 1인당 유아·유아원·종교·전액 혜의유학은 1백50만원, 대학 240만원(본인전액)	납입증명서·영수증(공무원은 면제)
기부금	연금여의 3%내, 사립학교 기부금은 5%추가 인정	납입증명서
개인연금	불입액의 40%, 72만원 한도	납입증명서(영수증 인됨)
근로소득	세액 50만원이하 15%초과분 30%, 60만원 한도	소득공제신고서
근로자 주식저축	불입액(연간공제의 30%, 1천만원 한도)의 5%	납입증명서
공 제	주택자금 이자 수유자가 95년 10월말 현재 미분양주택 구입시 받은 특별대출금 이자	공제신청서·미분양주택인증서·차입금이자 상환증명서·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생 활 정 복

부양가족이 있는 봉급생활자는 자연처럼 1인당 1백만원씩의 인적 공제 혜택을 받는다.

근로소득세를 한 푼이라도 더 줄이는 요령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늦어도 올해말까지 공제서류를 제출한다.

연말정산은 올해말에 서류를 받아 내년 1월 월급지급 때에 이뤄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영수증 등 각종 공제혜택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게 좋다.